

無料審判辯論制度의 導入에 관한 研究

李哲煥

*부산해양안전심판원

1. 序

審判辯論人이란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利害關係人 등을 대신하여 海洋安全審判에 관한 行爲를 代理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¹⁾ 海洋安全審判院의 目的是 海洋事故에 대한 調查 및 審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紛明함으로써 海洋安全의 確保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審判에 있어서 사람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일 때에는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罰을 隨伴²⁾하기 때문에 海洋事故關聯者の 權益이 不當하게 制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海洋安全審判은 調查官의 審判請求로 개시되며, 海洋事故關聯者에게도 자신의 利益이 不當하게 制限되지 않도록 防禦할 수 있는 期會가 주어지지만³⁾, 해양사고관련자 스스로만으로는 國家權力이라는 強力한 배경과 審判의 節次 및 海事關聯分野에 대한 專門的인 知識을 갖춘 調查官과 對等한 입장에서 審判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자기에게 利益이 되는 證據를 評價하고 提出할 수 있는 能力이 매우 不足하며, 審判을 받고 있다는 不安全感으로 인하여 心理

的 劣等感에 빠져있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그래서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에서는 海洋事故關聯者와 信賴關係에 있으면서 調査官과 對等한 專門知識을 가지고 있는 審判辯論人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⁴⁾公正한 審判이 實現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의 海洋安全審判制度에 있어서는 經濟的인 能力이 充分한 海洋事故關聯者만이 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事由로 인하여 스스로 審判辯論人을 求할 수 없는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國家가 審判辯論人을 選任하여 줌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公明正大한 審判이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商船과 영세어민 소유의 小形漁船이 충돌한 事故 등의 경우와 같이, 商船은 대부분 船主責任相互保險組合에 가입되어 있고, 損害의 精算에 있어서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書가 民事

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있으므로, 審判辯論人選任費用까지 負擔하면서 審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漁船의 경우는 自身의 費用으로 審判辯論人을 選任하는 것이 어려운 實情이므로 審判辯論人の 도움을 받아 對等한 입장에서 審判을 받을 期會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러한 經濟的인 事情 등으로 인하여 審判辯論人을 選任하기 어려운 海洋事故關聯者들을 보호하기 위한 無料審判辯論制度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바, 現行 司法制度에 있어서의 國選辯護人制度, 憲法訴願의 國選代理人制度, 法律救助法에 의한 大韓法律救助公團의 法律救助制度, 우리나라와 유사한 海難審判制度를 유지하고 있는 日本國 海難審判協會의 權利擁護事業 등을 檢討해보고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의 無料審判辯論制度導入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國選辯護人制度

2.1 辯護人制度

訴訟에 있어서 嘗事者主義를 理想的으로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被告人이 訴訟主體로서 原告官인 檢事와 對等한 위치에서 攻擊·防禦할 수 있는 힘의 均衡이 維持되어야 하나 양자 사이에는 法律的 素養이나 能力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法律의in 면에서 被告人의 權益을 擁護하는 制度로서 辯護人制度가 필요로 하게 된다.

辯護人이란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防禦權을 補充하기 위하여 특히 選任된 補助者를 말하며,⁵⁾ 원칙적으로 辯護士의 資格을 가진 者 중에서 選任하도록 되어 있고,⁶⁾ 被告人 또는 被疑者 기타 關係人이 自己의 費用으로써 任意로 選任하는 私選辯護人과 貧困 기타의 事由로 被告人이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경우 一定한 要件下에 法院이 職權으로 選任하는 國選辯護人이 있는데, 私選이든 國選이든 法律上 認定된 權利에는 차이가 없다.⁷⁾

1)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제29조

2)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제5조제2항

3)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海洋安全審判은 “必要的辯論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4)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제27조

5) 鄭榮錫·李炳國 共著, 刑事訴訟法(全訂版)(서울, 도서출판 法文社, 1997년 1월 20일), 86쪽

6) 刑事訴訟法 제31조

7) 韓相範 外, 도설 법률용어사전, (서울, 법전출판사, 2000년 4월 1일), 1217쪽

2.2 國選辯護人制度

2.2.1 意義

憲法 第12條 4項에서는 刑事被告人과 被疑者에게 辯護人の 助力を 받을 權利를 國民의 基本權으로 保障하고, 더 나아가 經濟的인 事由나 聾啞者, 未成年者 등의 特別한 事由가 있다거나 必要의 辯護事件 등 法律이 定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國家가 刑事被告人을 위하여 辯護人을 불이는 國選辯護人制度를 憲法上의 制度로 規定하고 保障하고 있다.

이러한 國選辯護人制度는 우리 憲法이 福祉國家, 文化國家主義를 憲法理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刑事訴訟法上으로는當事者主義 訴訟構造를 效率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制度中의 하나로 일정한 事由가 있는 刑事被告人이나 適否審查를請求한 被疑者が 法律專門家인 辯護人으로부터 法的助力을 充分히 받아, 憲法上의 基本權인 身體의 自由가 保障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國選辯護人은 管轄區域 안에 사무소를 둔 辯護士,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公益法務官 또는 修習中인 司法研修生 중에서 選定하며, 被告人 또는 被疑者 1인마다 1인을 選定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事件의 特殊性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는 1인에게 수인의 國選辯護人을 選定할 수도 있고, 被告人 또는 被疑者 수인간의 利害가 相反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인의 被告人 또는 被疑者에 대하여 同一한 國選辯護人을 選定할 수도 있다.

2.2.2 選定事由

法院이 職權으로 國選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하는 境遇¹⁾는 ① 刑事訴訟法 第33條의 규정에 따라 被告인이 未成年者이거나 70세 以上的 者, 聾啞者, 心身障礙의 疑心이 있는 者 등과 貧困, 其他의 事由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者 중 申請이 있는 境遇, ② 같은 法 第282條의 规定에 따라 死刑, 無期 또는 단기 3年 以上的懲役 또는 禁錮刑에 該當하는 事件의 境遇는 辯護人이 없이는 開廷할 수 없으므로 辯護人이 없는 境遇 또는 辯護人이 있더라도 出席하지 아니한 境遇, ③ 같은 法 第214條의 2 第9項의 规定에 따라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같은 法 第33條 规定의 要件에 該當 境遇, ④ 같은 法 第438條의 规定에 따라 死亡者 또는 回復할 수 없는 心神障碍者를 為하여 再審의請求가 있는 境遇, 有罪의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의 判決前에 死亡하거나 回復할 수 없는 心神障碍者로 된 境遇에는 被告人이 出廷하지 아니하여도 審判을 할 수 있으나 辯護人이 出廷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므로 再審을請求한 者가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境遇 등이다.

2.2.3 選定方法

裁判長은 公訴提起 또는 購捕·拘束適否審查請求가 있는 때에는 辯護人이 없는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刑事訴訟法 第33

條 第1號乃至第4號의 规定에 該當하고 스스로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할 境遇 法院이 國選辯護人을 選任한다는 事實과 第33條 第5號의 规定에 該當하는 때에는 法院에 대하여 國選辯護人的 選定을 請求할 수 있다는 趣旨의 事實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²⁾

告知를 받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相當한 期間 내에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辯護人을 選任하여야 하나, 다만 第33條 第5號의 规定에 該當하는 때에는 被告人 또는 被疑者の 청구가 있어야 한다.³⁾

各級 法院은 每年 1月 中當該年度에 國選辯護를 擔當한 辯護士로豫定한 사람을 一括登載한 國選辯護人豫定者名簿를作成하여야 하는데, 名簿에 登載한 辯護士는 首席部長判事 및 法院長이 指命하는 判事 3인과 主務課長으로構成하는 會議體에서 각 裁判長이 그 直前 年度 國選辯護人活動에 대하여 作成한 評價書 등을 參考하여 指定한다.⁴⁾

그리고, 各級法院은 名簿 중에서 2乃至5인씩을 각 裁判部에 미리 全屬시켜 그 중에서 國選辯護人을 選定할 수 있는데, 全屬시킬 辯護士의 수는 通常 國選辯護人 1인이 年間 50件乃至 100件의 國選辯護를 擔當할 때에 必要한 人員數를 基準으로 하여 정한다.⁵⁾

또한, 各級法院은 가능한 한 被告人에게 國選辯護人을 選擇할 기회를 주고, 被告人의 意思를 参照하여 國選辯護人을 選定하도록 하는데, 裁判部別 全屬 國選辯護人을 指定하는 法院의 境遇는 被告人이當該 裁判部의 全屬 國選辯護人 중에서選擇하여 選定請求를 할 수 있지만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全屬 國選辯護人이 아닌 辯護士로서 그 法院의 名簿에 登載된 辯護士를 國選辯護人으로 選定해 줄 것을 請求할 수도 있으며, 被告人이 特定 辯護士에 대하여 優先順位를 정하여 選定請求를 하는 境遇 裁判長은 國選辯護人 選定要件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被告人이 최優先의으로 選擇한 辯護士를 國選辯護人으로 選定한다.⁶⁾

2.2.4 報酬의 支給

이렇게 選定된 國選辯護人の 選任費用은 刑事訴訟費用法 第1條, 第3條, 刑事訴訟費用등에 관한規則 第5條 등에서豫算의範圍내에서 大法官會議를 거쳐 法院이 정하도록 规定하고 있으며⁷⁾, 裁判長은 이 基本報酬額을 基準으로 하여 事案의 難易, 記錄의複寫나 被告人 또는 被疑者の 接見 등에 支出한 費用 기타 事項을 參酌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基本報酬額의 5倍의範圍 안에서 國選辯護人の 報酬를 增額할 수 있다.

2) 형사소송규칙 제16조

3) 형사소송규칙 제17조

4) 대법원국선변호에관한예규(재형 2003-10) 제3조

5) 같은 예규 제4조

6) 같은 예규 제10조

7) 2004년도 제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및 제1심, 제2심, 제3심 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 건당 15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대법원 문서번호 민사 4101-1402)

1) 형사소송법 제283조

報酬增額의 基準으로는 被告人의 數가 1인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超過하는 매 1인마다 基本報酬額의 30%範圍 내에서, 公判期日의 法廷出席回數가 2회를 超過하는 境遇에는 超過하는 매 1회마다 基本 報酬額의 30% 範圍 内에서, 法廷 外 公判期日, 檢證期日, 證人訊問期日 또는 鑑定人訊問期日에 出席한 境遇에는 매 出席回數마다 基本 報酬額의 50% 範圍 内에서, 國選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申請하여 訊問한 證人의 數가 1인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超過하는 매 1인마다 基本 報酬額의 30% 範圍 内에서, 被告人 接見횟수가 1회를 超過하는 境遇에는 超過하는 매 1회마다 基本 報酬額의 30% 範圍 内에서 增額하여 支給한다.

그리고, 辯論活動을 위하여 記錄의 閱覽, 複寫·通譯, 翻譯을 施行하거나 旅費, 宿泊費, 食費 其他 費用을 支出한 境遇에는 不當히 過多한 것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는 한 國選辯護人이 昭明하는 費用의 全額을 支給하며, 昭明資料 提出이 없는 境遇裁判長은 基本 報酬額의 50% 範圍 内에서 增額하여 支給할 수 있다.

또한, 裁判長은 事案의 難易, 國選辯護人이 遂行한 職務의 內容, 事件處理에 所要된 時間과 努力 其他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基本 報酬額의 100% 範圍 内에서 增額하여 支給할 수 있다.

國選辯護人으로 選定되었다가 選定이 取消되거나 辯論終決時に 關與하지 아니한 國選辯護人에 대해서는 當該 國選辯護人이 辯論에 關與한 정도나 遂行한 職務의 內容 등을勘案하여 基本 報酬額의 50% 範圍 内에서 減額하여 報酬額의 50%以上을 支給할 수 있다.

3. 國選代理人制度

3.1 代理人制度

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은 '각종 審判節次에 있어서 當事者인 私人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하지 아니하면 審判請求를 하거나 審判遂行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民·刑事訴訟의 境遇와는 달리 憲法裁判에 있어 辯護士强制主義를 규정하고 있다.

辯護士强制主義 채택은 本人訴訟主義에 비해 裁判의 本質을 理解하지 못하고 裁判資料를 제대로 整理하여 提出할 能力이 없는 當事者를 保護함으로써 司法의 正義의 實現에 寄與할 수 있고, 勝訴可望性이 없는 事件을 事前에 辯護士를 통해 掃去시키는 한편 裁判資料를 法律의 으로 다듬고 整理하여 裁判所에 提出함으로써 보다 效率의 国家의 憲法裁判의 運營을 기할 수 있으며, 當事者가 스스로 訴訟을 遂行할 때는 法律보다는 感情에 부반처 事案을 不透明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選別 없는 無理한 資料의 提出로 裁判資料를 散積하게 하여 審理의 負擔을 加重시키는 弊害를 蒼起할 수 있으나 辯護士强制主義를 採擇함으로써 이러한 弊害를 解消하는데 寄與할

수 있고, 裁判官의 官僚的인 偏見과 不當한 權威意識 또는 自意로부터 當事者를 保護하고 優重한 審理를 하도록 감시함으로써 國家司法民主化에 貢獻하는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의 利點이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利點에도 불구하고 辯護士受任料가 高額인 現實에 비추어 資力이 없는 자의 憲法裁判에의 接近을 막고 따라서 憲法裁判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侵害할 慮慮가 있다는 점을 否定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補完하기 위해 憲法裁判所法 第70條는 憲法訴願審判에 있어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는 境遇 憲法裁判所에 國選代理人을 選任해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國選代理人制度

3.2.1 憲法訴願

憲法訴願이란 公權力의 行事 또는 不行事로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이 侵害되는 경우에 國民이 憲法裁判所에 대하여 自身의 基本權을 救濟하여 줄 것을 請求하는 制度로서, 憲法訴願이 理由 있는 경우 憲法裁判所는 基本權을 侵害하는 公權力作用을 取消하거나 違憲確認을 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을 救濟하여 주는 制度이다.

憲法訴願의 대상은 公權力의 行事 또는 不行事가 되는 바, 여기서 公權力의 行事에는 法律의 制定이나 行政立法도 포함되나 그 法律 등이 별도의 구체적 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直接的으로, 그리고 現在的으로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하는 경우에 限定되며, 法院의 裁判은 憲法訴願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現行法上 法院의 裁判인 判決·決定·命令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는 없다.

3.2.2 意義 및 申請節次

앞에서 언급했듯이, 憲法裁判은 다른 訴訟節次와 달리 반드시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辯護士를 選任하지 않고 請求한 경우는 指定裁判部에서 審判請求를 却下하게 된다.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는 當事者가 申請하면 國庫에서 그 報酬를 支給하는 國選代理人을 選定해주고 있는데, 國選代理人의 選任을 원하는 자는 憲法訴願事由를 明示한 國選代理人選任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하며, 이때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음을 소명하는 資料(零細民證明書, 生活保護對象者證明書, 地方稅未果稅證明書 등)를 添附하여야 한다.

憲法裁判所에서는 현재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는 자의 基準을 ① 月 平均收入이 100만원 미만인 者, ② 6급이하 公務員, ③ 生活保護對象者, ④ 國家有功者 등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에 의한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 ⑤ 위 각 호에는 該當하지 아니하나 請求人이나 그 家

1) 金鍾容외, 憲法裁判節次의 改善을 위한 立法論的研究, 檀大法科, 1993.6., 5면

族의 經濟能力에 비추어 보아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하는 것을 期待하기 어려운 境遇 등으로 豫示하고 있다.

憲法裁判所法 第70條에서는 國選代理人制度를 두어 憲法訴願審判請求에서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는 境遇에는 當事者の 申請에 의하여 國庫에서 그 報酬를 支給하는 國選代理人을 選定해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國選代理人의 選任을 원하는 자는 憲法訴願事由를 明示한 國選代理人選任申請서를 提出하여야 하고, 이 境遇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資力이 없다는 昭明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¹⁾

3.2.3 國選代理人豫定者 選定

憲法裁判所에서는 每年 年末까지 다음 年度의 國選代理人으로豫定한 辯護士를 一括登載한 國選代理人豫定者名簿를 作成한다.²⁾

國選代理人의 選定은 大韓民國에 事務所를 둔 辯護士 중에서 하며,³⁾ 大韓辯護士 協會의 推薦을 받아 憲法裁判所長이 每年 定하는 國選代理人豫定者名簿에 登錄된 辯護士 중에서 順次로 均等하게 行함을 原則으로 하는데, 다만 請求人の 居住地 등을 고려하여 名簿外의 辯護士를 國選代理人으로 選定할 수 있다.⁴⁾

國選代理人은 請求人마다 1인을 選定하는 것이 原則이나, 事件의 特殊性에 비추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1인의 請求人에게 數人の 國選代理人을 選定할 수 있으며,⁵⁾ 또한, 請求人 數人 사이에 서로 利害가 相反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數人の 請求人을 위하여 同一한 國選代理人을 選定할 수 있다.⁶⁾

國選代理人이 選定되었더라도 以後 請求人에게 辯護士가 選任되거나, 國選代理人이 辯護士法에 規定한 資格을喪失한 때, 憲法裁判所가 제7조의 規定에 의하여 國選代理人의 辭任을 許可한 때 憲法裁判所는 遷滯없이 國選代理人의 選定을 取消해야 하며,⁷⁾ 또한, 國選代理人이 그 職務를 修行하지 아니하거나 기타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 憲法裁判所는 그 國選代理人의 選定을 取消할 수 있다.⁸⁾

請求人에게 辯護士가 選任된 때 以外의 事由로 國選代理人의 選定을 取消한 境遇 憲法裁判所는 遷滯없이 다른 國選代理人을 選定하여야 하며,⁹⁾ 國選代理人의 選定을 取消하거나 再選定한 때에는 遷滯없이 그 뜻乙 當該 國選代理人과 請求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¹⁰⁾

3.2.4 國選代理人에 대한 報酬支給

國選代理人으로 選定된 辯護士에게는 本案事件의 終了後에 每年 豫算의 範圍 안에서 審判에 관한 書類의 提出, 辯論期日 또는 證據調查期日에의 參席 등의 事項을 참작하여 報酬가 支給되는데, 審判請求人을 面談하거나 辯論, 證據調查 또는 檢證을 위하여 出席하였을 때에는 每回 15만원을 支給하지만 面談에 대한 報酬支給은 1回에 限하되 國選代理人으로 選定된 者는 請求人을 面談한 것으로 본다.

裁判長은 國選代理人이 審判請求書, 證據者料, 準備書面 기타 審判에 관한 書類를 提出하였을 때에는 위의 出席을 한 것으로 보아 報酬를 支給할 수 있으며, 事件의 難易, 國選代理人이 遂行한 職務의 內容, 請求人の 數, 記錄의 謄寫나 請求人の 面談 등에 支出한 費用 또는 기타 事項을 參작하여 報酬合計를 最高 150만원의 範圍 안에서 15만원 單位로 增額할 수 있다.¹¹⁾

4. 法律救助制度

4.1 法律救助의 意義

法律救助(Legal Aid)란 國民權利의 平等을 實現하기 위하여 法律專門家의 도움이나 裁判費用 등의 支援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憲法 第27條제1항에서는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여 民事紛爭 또는 刑事事件의 被疑者 및 被告人 등에 대하여 法院으로부터 적정한 法的判斷을 받을 機會를 保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複雜한 節次에 따라 法院에서裁判을 받기 위해서는 法律專門家인 辯護士의 도움이 必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法院에 高額의 費用을 支拂해야 하고, 保証이 必要할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裁判以前의 節次인 法院의 調整이나 裁判外의 交涉 등에 있어서도 辯護士의 도움을 必要로 하게 된다.

法律救助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辯護士費用이나 法院費用을 支拂하기가 困難한 사람들을 위하여 公的資金으로 支援하는 制度로서, 當事者間의 經濟力의 差가 權利의 差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社會의 公平性을 確保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우리나라 法律救助法第2條는 法律救助를 “basic的 人權을 摩護하고 나아가 法律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經濟적으로 어렵거나 法을 모르기 때문에 法의 保護를 充分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法律相談, 辯護士에 의한 訴訟代理, 기타 法律事務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法律救助의 內容으로는 法律相談, 書式作成, 訴訟救助 등이

- 1)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
- 2) 국선대리인선정및보수지급에관한내규 제2조
- 3)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2조
- 4) 국선대리인선정및보수지급에관한내규 제3조 제1항
- 5)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6)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 7) 필요적 취소사유(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 8) 임의적 취소사유(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 9)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10)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6조 제4항

11) 1994. 1. 20.자, 국선대리인보수지급에관한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 의결

포함되며, 制度化된 法律救助로는 刑事訴訟法上의 國選辯護人制度와 民事訴訟法上의 訴訟救助 및 法律救助法上의 法律救助 등이 있고, 여기에 TV나 라디오를 통한 法律相談, 一般人을 對象으로 한 法律講演會, 相談事例集의 排布 등 “正義에 대한平等한 接近(Equal Access To Justice)”이라는 요구를 充足시키기 위한 모든 活動도 重要한 法律救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¹⁾

4.2 우리나라 법률구조단체

4.2.1 개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法律救助需要에 대한 供給의 主體인 大韓法律救助公團과 韓國家庭法律相談所, 大韓辯護士協會와 서울地方辯護士協會 그리고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등을 中心으로 그 形成과 構成 및 活動內容 등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4.2.2 韓國家庭法律相談所

韓國家庭法律相談所는 法律救助法이 制定되기 훨씬 전인 1956年 女性問題研究院 附設 ‘女性法律相談所’라는 이름으로創設된 이후 法律救助의 先驅의인 役割을 해왔으며, 法律相談과 訴訟救助 등 협의의 개념의 法律救助를 포함하면서도 좀 더 융통성 있고 非訴訟의인 紛爭解決과豫防을 위해 法改正運動, 教育事業, 調查研究 등 多樣한 領域의 法律救助活動을 開發하고 穩屈으로써 社會疎外階層과 一般國民들의 法的保護 및 法意識擴散에 주력하고 있다.

1 法律相談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서는 家事, 民事, 刑事事件 등 法律問題 전반에 걸쳐 無料法律相談을 실시하고 있으며 面接, 書信 및 電話, 紙上·巡迴·인터넷·出張相談 등 多樣한 相談窗口가 開設되어 있으며, 每週 月曜일마다 職場人을 위한 夜間相談도 실시하고 있다.

法律相談은 專門法律相談委員과 自願奉仕 辯護士, 그리고 公益法務官 등이 擔當하고 있으며, 협의의 概念의 法律相談뿐만 아니라 夫婦問題 및 家庭問題 全般에 관한 專門의인 相談도 進行하고 있다.

2 和解調整과 無料代書

和解調整이란 분쟁의 해결을 곧바로 法에 의한 強制의인 解決에 맡겨버리기보다는 當事者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相談所를 방문하게 하여 對話を 나누고 調整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圓滿한 解決策을 찾도록 하는 過程으로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서는 紛爭解決의 崔優先으로 和解勸誘 및 調整에 많은 努力を 기울이고 있으며, 相談結果 經濟적으로 어려워 代書費用을 負擔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訴

1) 김상준,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2월, 7-8면 참조

訟關聯 書類를 作成해주는 無料代書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3 訴訟救助

相談結果 訴訟이 必要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家事事件 및 이와 관련 있는 事件을 對象으로 百人辯護士團²⁾의 辯護士와 公益法務官이 訴訟代理를 해주게 됩니다.

訴訟救助의 對象者는 生活保護對象者와 法을 잘 모르거나 經濟의으로 生活이 困難하여 스스로 訴訟을 遂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者로서 對象者임을 立證하는데 必要한 書類와 함께 訴訟救助申請書類를 相談所의 法律救助委員會에 提出하면 法律救助委員會에서는 救助對像者 및 救助事件 該當與否와 救助의 妥當性與否 등을 審查하여 訴訟救助決定을 내리게 되며 訴訟救助對像으로 決定된 事件은 百人辯護士團의 所屬辯護士와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 배치된 公益法務官이 訴訟을 遂行하게 된다.

訴訟費用은 無料를 原則으로 하나 訴訟事件이 終了된 후 지출한 訴訟費用과 당 事件의 勝訴價額을 基準으로 하여 一定한 比率에 의하여 算出한 費用을 依賴者로부터 償還받는데, 이렇게 償還된 費用은 다른 法律救助代像者들을 위한 事業에 다시 쓰이게 되며, 訴訟費用의 償還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件이나 依賴者의 經濟的 형편을 고려하여 償還을 免除하거나 減額을 할 수 있다.

4 기타 法律救助事業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서는 法律救助事業의 擴散을 위해 國內 뿐 아니라 海外에까지 支部設置事業을 계속하고 있는데, 2002年 現在 國內 30개 地域, 美國內 6개 地域에 支部가 設置되어 있다.

1977年 5月 家庭問題豫防을 위한 社會教育事業으로 始作된 意識改革을 위한 教育事業으로서 實生活에 꼭 必要한 法律講座인 生活法律講座와 異婚 혹은 死別한 女性들의 새로운 人生設計를 돋는 뉴 라이프강좌, 60세 以上的 女性과 男性을 위한 폭넓은 教養講座인 할머니 할아버지 學校, 婚姻準備教室, 再婚準備教室 등의 定期講座를 運營하고 있으며, 夫婦葛藤의 解決을 위한 워크샵 등의 公開講座와 家庭問題 專門相談員으로 活動할 사람을 對象으로 하는 專門教育인 家庭法律專門相談員教育 등을 運營하고 있다.

그 외에 家族法에서의 夫婦差別, 男女差別의 要所를 改正하고 폐지하기 위한 家族法改正運動, 女性關聯法律, 女性·家庭問題關聯 定期刊行物, 論文集, 新聞記事 클리핑(Clipping) 자료 등을 保有한 圖書室의 運營, 家庭問題, 家族法 등에 대한 폭넓은 調查·研究事業, 家族法改正, 青少年問題, 老人問題, 兒童問題, 人權問題 등을 主題로 家庭問題 全般에 대한 學術講演會開催 등의 事業을 遂行하고 있다.

2)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서는 自發의으로 相談所의 訴訟救助와 法律相談을 遂行하기 위해 辯護士들의 自願奉仕組織인 百人辯護士團을 1979년부터 結成하여 運營하고 있다. 現在 김춘봉 辯護士가 代表辯護士를 맡고 있으며, 全國 340명의 辯護士들이 加入해 있다.

.5 相談處理件數 統計

1956년 8월 25일 女性法律相談所가 設立된 以來 2002년 12 월 31일 現在까지의 相談處理件數의 統計는 아래의 表와 같다.

<표 1. 相談處理別 件數(本部 및 支部相談所)>

1) http://www.lawhome.or.kr/law/law_6.asp

| 상담처리 /구분 | 소송전구조 | | 법률상담 | 상담총건수 |
|-------------|-------|--------|------|-----------|
| | 화해조정 | 무료대서 | | |
| 본부 | 5,639 | 834 | 426 | 663,012 |
| 상담소 | 3,675 | 11,854 | 76 | 1,049,566 |
| 합계 | 9,314 | 12,688 | 502 | 1,712,578 |
| | | | | 1,735,082 |

4.2.3 大韓法律救助公團

大韓法律救助公團은 1986年 12月 國會를 通過한 法律救助法에 根據하여 1987年 8月 既存의 大韓法律救助協會를 吸收하여 새롭게 創設된 特殊法人으로 주로 法律救助事業을 통한 國民의 基本權擁護와 法律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삼고 있지만 그밖에도 法律救助制度에 관한 調查·研究, 違法精神의 昂揚을 위한 啓蒙事業, 기타 公團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등을 遂行하고 있다.

公團은 서울특별시에 本部를 두고, 그 아래에 18개의 支部와 37개의 出張所를 全國의 法院, 檢察廳에 對應하여 設置하고 있다.

1 法律相談

大韓法律救助公團의 法律救助業務는 法律相談에서 시작되는데, 相談結果 救助를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民事·家事事件, 行政訴訟, 憲法訴願事件에 대해서는 當事者間의 和解·調整이나 辯護士 또는 公益法務官이 訴訟代理를 하여 주고 刑事事件에 대해서는 辯護士 또는 公益法務官이 辯護를 해준다.

法律相談은 全國民을 對象으로 民事, 家事, 刑事, 行政事件 등 法律問題 全般에 대하여 無料로 實施하며, 公團事務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電話, 書信, 인터넷 등을 통하여 相談할 수도 있고, 특히, 서울中央地剖에서는 日曜日 및 夜間에도 相談을 하고 있으며, 支部 등에서는 公團의 도움을 必要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出場 移動法律相談도 實施하고 있다.

2 法律救助

法律救助는 訴訟代理, 刑事辯護, 기타 法律的支援을 해주는 것으로써 救助對像事件과 救助對像者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1) 民事·家事事件

1) 인터넷 사이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 법률구조처리건수 (http://www.lawhome.or.kr/law/law_6.asp) 참조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關한法律에 의한 國家訴訟事件은除外되며, 救助對象者로는 月平均收入 170만원 以下의 國民, 農·漁民, 6급 또는 6급相當 以下의 公務員, 尉官級將校 以下의 軍人, 國家報勳對象者, 物品의 使用 및 用役의 利用으로 인한 被害를 입은 消費者, 國民基礎生活保藏法에 의한 受給者, 障碍人福祉法 第2條에 의한 障碍人, 法院으로부터 訴訟救助決定을 받은 事件의 彼救助者(다만, 印紙貸 등 訴訟費用에 관한 訴訟救助決定만을 받은 彼救助者는 例外), 零細小賣人(月平均 담배販賣金額이 170만원 以下인 담배小賣人), 家庭暴力·性暴力·性賣買로 인한 被害를 입은 女性(단, 國內居住 外國人女性 포함), 기타 生活이 어렵고 法을 몰라 스스로 法的手段을 講究하지 못하는 國民, 月平均收入 170만원 以下의 國內居住 外國人 등이 該當된다.

法律救助를 받고자 하는 者는 所定樣式의 法律救助申請書와 함께 本人의 住民登錄謄本과 法律救助對象者임을 明昭할 資料, 그리고 主張事實을 立證할 資料를 該當地

域의 公團事務室에 提出해야 하며, 法律救助申請書가 接受되면 公團에서는 즉시 事實調查에 着手하는데, 事實調查가 一定段階에 이르면 當事者에게 紛爭에 대한 法律的問題點과 그 解決方法을 提示하여 當事者間에 圓滿히 和解를 이를 수 있도록 勸誘하고, 이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和解가 成立하지 않을 경우에는 救助의 妥當性, 勝訴可能性, 執行可能性을 審查하여 訴訟을 할 것인지 與否를 決定하여 訴訟을 하기로 決定된 事件은 公團 所屬辯護士나 公益法務官이 訴訟을 遂行하고, 救助棄却으로 決定된 事件은 依賴者가 이에 不服할 경우 公團의 中央法律救助審查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中央法律救助審查委員會에서는 異議申請된 事件을 再檢討하여 救助與否를 다시 決定하게 된다.

和解事件은 無料이지만 訴訟遂行事件에 대해서는 訴訟終了後 公團에서 支出한 訴訟費用을 依賴者로부터 償還받지만, 無料法律救助對象者와 敗訴事件, 勝訴價額 500만원 以下의 少額事件, 기타 訴訟費用의 償還 또는 回收가 不適當하거나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事件 등의 境遇는 償還을 免除시켜 주기도 하고, 境遇에 따라 依賴者의 事情을 考慮하여 分割償還할 수도 있으며, 償還된 費用은 다른 法律救助對象者の 費用으로 쓰인다.

(2) 刑事事件

大韓法律救助公團에서는 民事·家事事件 뿐만 아니라 刑事事件에 대해서도 法律救助를 하는데, 拘束事件, 公判節次에 불여진 事件, 少年部에 送致된 事件, 再審事件에 대하여 公團所屬辯護士 또는 公益法務官이 변호를 한다.

救助對象者は 民事·家事事件과 同一하며, 公團支부 또는 出張所에 書面으로 救助申請을 하면 公團에서 救助對象者與否, 救助의 妥當性 등을 審查하여 救助與否를 決定하여 救助가 決定되면 所屬辯護士 등이 刑事辯護를 하며, 救助棄却된 事件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公團理事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데, 公團理事長은 異議申請事件에 대한

審查後 救助棄却決定 또는 訴訟救助決定을 해야 한다.

刑事案件과 關聯된 一切의 費用은 公團에서 負擔하지만, 保釋保證金 또는 保釋保證保險證券手數料는 依賴者가 負擔해야 한다.

(3) 行政審判 · 行政訴訟 · 憲法所願事件

모든 行政訴訟事件, 憲法所願事件과 行政審判事件 中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및 각 市·道行政審判委員會 事件을 對象으로 하며, 事件處理節次 및 費用 등은 民事事件과 同一하다.

.3 法律救助實績

1987년 9월 1일 法律公團發足부터 2003年末까지 公團은 아래 表와 같이 24,418,920件의 無料法律相談과 362,906件의 民事·家事事件의 分爭解決實績이 있으며, 1996년 6월부터 始作된 刑事法律救助事業은 58,709건의 無料辯護實績이 있다.¹⁾

<表 2. 法律相談件數 統計>

* 單位 : 件

| 年度 | 計 | 直接相談 | 132 ·fax情報提供 | 인터넷情報提供 |
|-------------------|------------|-----------|-----------------|-----------|
| 1987 ~ 1994 | 2,477,473 | 2,035,163 | 327,964 | 114,346 |
| 1995 | 683,334 | 365,142 | 231,256 | 86,936 |
| 1996 | 1,082,152 | 489,205 | 442,113 | 150,834 |
| 1997 | 1,161,231 | 594,777 | 338,620 | 227,834 |
| 1998 | 1,590,768 | 804,535 | 379,226 | 407,007 |
| 1999 | 1,599,724 | 822,864 | 364,058 | 412,802 |
| 2000 | 1,894,228 | 840,283 | 391,745 | 662,200 |
| 2001 | 3,283,801 | 894,006 | 405,702 | 1,984,093 |
| 2002 | 4,710,666 | 899,285 | 252,803 | 3,558,578 |
| 2003 | 5,935,543 | 1,001,370 | 251,500 | 4,682,673 |
| 계 | 24,418,920 | 8,746,630 | 3,384,987 | 12,287, |

<表 3. 法律救助件數 統計>

* 單位 : 件

| 年度 | 民事·家事事件 등(行政·憲法所願事件 包含) | | | | 刑事案件 |
|---------------|-------------------------|---------|---------|----------|--------|
| | 計 | 訴訟前救助 | 訴訟救助 | 救助金額(億원) | |
| 1987~ 1994 | 141,546 | 99,867 | 41,679 | 5,784 | |
| 1995 | 14,165 | 5,958 | 8,207 | 1,916 | |
| 1996 | 15,824 | 5,366 | 10,458 | 2,263 | 654 |
| 1997 | 17,184 | 4,900 | 12,284 | 2,437 | 1,954 |
| 1998 | 19,971 | 4,369 | 15,602 | 3,318 | 2,716 |
| 1999 | 20,921 | 3,301 | 17,620 | 2,619 | 3,752 |
| 2000 | 25,664 | 2,745 | 22,919 | 3,246 | 9,442 |
| 2001 | 29,884 | 1,698 | 28,186 | 3,837 | 11,880 |
| 2002 | 33,310 | 1,256 | 32,054 | 4,441 | 11,606 |
| 2003 | 44,437 | 999 | 43,438 | 6,398 | 16,705 |
| 計 | 362,906 | 130,459 | 232,447 | 36,259 | 58,709 |

4.2.4 大韓辯護士協會의 法律救助事業會

.1 法律救助事業

1) 인터넷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중 법률 구조/법률상담실적 참조

辯護士는 法을 통하여 基本的人權을 擁護하고 社會正義를 實現함을 使命으로 하는 바, 大韓辯護士協會에서는 의을 하게自己의 權利를 侵害받고 있으면서 法的節次의 無知, 經濟的貧困, 기타 사유로 權利救濟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法律相談, 訴訟代理, 刑事事件辯護, 기타 法律的 支援을 통하여 被害發生을 事前에 豫防하고 侵害당한 權利를 救濟하여 좀으로써 國民의 基本的人權을 保障한 憲法精神을 바탕으로 社會正義實現에 寄與하기 위한 法律奉仕制度로서 法律救助機構인 法律救助事業會를 設置·運營하고 있으며, 각 地方辯護士會에는 그支部를 두고 있다.

法律救助를 받기 위해서는 각 地方辯護士會支部의 無料法律相談室에서 無料法律相談을 거친 後 意見書, 法律救助對象者疏明書類, 事件證據資料, 住民登錄謄本 등과 함께 法律救助申請書를 提出해야 하며,支部가 設置되지 않은 地域에서는 開業中인 辯護士事務室에 申請하면 된다.

法律救助事業會에서 심사한 결과 法律救助對象者임이 認定되면 辯護士를 選任하여 訴訟遂行을 한 後 代替支給한 訴訟費用은 法律救助申請者의 經濟的狀況 등에 따라 償還與否가 決定되며, 法律救助對象事件 및 對象者, 無料法律救助의 範圍 등은 大韓法律救助公團과 大同小異하다.

.2 無料法律相談, 기타

大韓辯護士協會는 時局事件의 被告人 등에 대한 無料辯論, 希望者에 대한 無料法律相談, 갑자기 司法機關에 連行되어 도움이 必要한 者에 대한 當直辯護士制度, 辯護士選任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辯護士案內制度, 中小企業經營人の 法的苦衷에 대한 中小企業人特別窓口, 外國人勞動者들을 위한 法律救助事業 등을 實施하고 있으며, 對國民 公益活動 차원에서 北韓離脫住民의 南韓 法體系適應을 돋기 위한 北韓離脫住民法律支援辯護士團을 構成하여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法律相談과 必要한 境遇 法律救助事業會를 통한 無料刑事救助活動 및 最小實費에 의한 民事救助活動을 實施하고 있다.

그 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設置·運營하는 綜合法律센터의 無料法律相談, 韓國女性辯護士會에서 運營하는 女性法律相談所의 無料法律相談 등이 運營되고 있다.

4.2.5 기타 法律救助團體

앞서 說明한 團體 외 法律救助團體로서 維新時代와 第5共和國時代에 時局事件의 辯論을 도맡았던 所爲 人權辯護士들의 傳統을 繼承하여 보다 組織的인 次元에서 法律救助를 포함한 辯護士運動을 展開해 나가겠다는 기치 아래 1988년 5월 創立한 自發的 辯護士團體인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略稱 : “民辯”)이 있는데, 法律相談보다는 訴訟救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國家保安法 위반, 集會와示威에關한法律 위반 등 所爲 時局事件에 대한 刑事辯論이 救助事件의 大部分을 차지하지만 廣義의 法律救助인 法律改正運動과 社會改革運動 또한 重要한 活動內容으로 삼고 있다.

5. 日本海難審判協會의 權利擁護事業

日本의 財團法人 海難審判協會는 海難審判의 公正한 運營을 위하여 設立된 團體로서, 海難審判 및 同 事件에 관하여 調査·研究하고, 또한, 同 事件 關係者와의 商談 및 審判扶助에 응하고 있다.

海難審判廳의 理事官이 海難을 認知하면 調査를 行하여 그結果 海難의 原因을 究明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면 審判을 請求하게 되며, 이때, 審判關係者로서 受審人과 指定海難關係人을 指定하게 되는데, 指定된 경우는 審判庭에 出頭하여 裁決이 完結될 때까지 當事者로서 行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事件이 海難審判廳에 申立て되어 海難審判의 當事者로서 受審人 또는 指定海難關係人으로 指定되면 審判庭에 나아가 自身의 立場을 正當하고 적절하게 主張할 必要가 있으며, 이를 도와주는 者가 補佐人이다.

海難審判協會에서는公正한 審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海難審判相談所를 全國의 海難審判廳 所在地에 設置하여 經濟的 이유로 스스로 補佐人을 선임할 수 없는 者에 대하여 補佐人選任에 필요한 經費를 扶助하여 補佐人을 選任해 주는데, 相談員이 審判手續, 補佐人の 依頼, 海難審判扶助 등 海難審判에 관한 一切에 대하여 친절하게 無料로 相談에 응하고 있다.

海難審判協會는 同協會의 趣旨에 賛同하는 後援者들의 賛助로 運營되는데, 賛助會員의 年會費는 團體가 2만엔, 個人이 5천엔 정도이다.

6. 無料審判辯論人制度의 導入方案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海洋安全審判對像事件 또한 廣義의 法律救助對像事件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더욱 公明正大한 審判의 實現을 위해서, 또한, 經濟의 인事情 등으로 인하여 審判辯論人을 選任하기 어려운 海洋事故關聯者들을 보호하기 위한 法的保護裝置로서 無料審判辯論制度의 導入이 시급한 실정인데, 앞서 살펴본 여러 制度를 參照하여 無料審判辯論制度의 導入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行의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關한 法律에 刑事訴訟法 및 憲法裁判所法에 의한 辯護士強制主義와 類似한 制度로서 審判辯論人強制主義의 根據規定을 마련하여 國家의 財政의 支援을 받아 運營되는 國選審判辯論人制度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法改正을 통하여 衝突事件 등 一定한 범위를 定하여 반드시 審判辯論人을 選任해야 審判을 進行할 수 있도록 하고, 經濟的事由 등으로 인하여 審判辯論人을 選任할 수 없는 一定한 要件을 갖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해서는 審判長職權으로 審判辯論人을 選任하게 하여 그 費用은 國庫에서 支給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國選辯護人制度 또는 國選代理人制度와 類似한 制度로서 國選審判辯論人制度를 導入하되 審判長職權으로 選任하

는 審判辯論人을 海技士協會 또는 水協, 船員勞組 등 有關團體의 任職員 가운데 審判辯論人資格을 갖춘 者 중에서 選任하고, 費用은 그 所屬團體에서 負擔하도록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方案을 實行하기 위해서는 水協 등 有關團體와 緊密한 協議를 거친 후 支援을 받을 수 있어야 實行이 가능하다.

셋째, 日本의 海難審判協會와 같은 성격의 海洋安全審判協會를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산하단체로 두어 法律救助制度와 같은 성격의 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方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方案의 實行에 있어서도 國家의 財政的支援이 뒤따라야 하며, 大韓法律救助公團에서 이미 行政審判에 대한 法律救助業務를 開始하였으므로 協會의 運營 및 費用에 대해서 大韓法律救助公團과 緊密한 協調를 통하여 解決하는 方案도 檢討할必要가 있다.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貧困 등의 事由 때문에 審判辯論人을 選任하지 못하여 海洋事故關聯者의 利益이 不當하게 制限되는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制度의 改善을 위한 積極的인 努力과 關心이 必要한 때이다.

참 고 문 헌

- [1]. 李普寧, “現行國選辯護人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법조, 1994년
- [2]. 金澤鉉, “國選辯護人制度에 대한 考察”, 사법행정 제20권 제5호, 1979년
- [3]. 朴嬉太, “國家辯護士制度의 創設을 바라며”, 법률신문 제 1145-1147호, 1976년
- [4]. 梁建, “司法改革을 위한 制度的方案”, 법률신문 제2254호, 1993년
- [5]. 朱柄惠, “上告審에서 본 國選辯護人制度”, 사법행정 제10권 제2호, 1969년
- [6]. 金相培, “國選辯護人制度와 그運用實態에 關한 考察” 司法研究資料 18輯, 1991년
- [7]. 張秀吉, “國選辯護制度와 그 運用에 關하여”, 大韓辯護士協會誌33號 1978년
- [8]. 김상준,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9년 2월
- [9]. 鄭在吉, “韓國의 法律救助制度에 關한 研究”, 法學研究 第18輯
- [10]. 黃勝虎, “법률구조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
- [1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실무제요”, 1999년
- [12]. 財團法人 海難審判協會, “權利擁護事業”, Internet 검색 (<http://www2cdn.ne.jp/maia/sub1.htm>)
- [13]. 헌법재판소, “심판절차/헌법소원심판/국선대리인제도”, Internet 검색(<http://www.court.go.kr/>)
- [14]. 대한법률구조공단, Internet 검색(<http://www.klac.or.kr>)
- [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無料審判辯論制度의 導入에 관한 研究

Internet 검색(http://www.lawhome.or.kr/law/law_6.asp)

[16]. 대한변호사협회,

Internet 검색(<http://www.koreanbar.or.kr/>)